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최연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305
----------	------

발의연월일 : 2017. 6. 9.

발의자 : 최연혜 · 김한표 · 송희경
김규환 · 김도읍 · 이명수
김승희 · 이종명 · 홍문표
윤한홍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절취한 석유인 줄 알면서도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절취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의 규정에 따르게 되는데,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범죄의 위험성 및 사회적 비용에 비하여 실효성이 낮고, 석유를 절취한 자에 비해 그 처벌의 수위가 낮아 범죄예방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형법」에서 절도죄는 제329조에 의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물죄는 제362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이 부과되어 있으나, 「송유관

안전관리법」은 석유를 절취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어, 절취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에게는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본 법에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제13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제1호의”로 한다.

1. 제13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의2(별 칙) ① <u>제13조제1항</u> <u>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u> <u>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자는 2</u> <u>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u> <u>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u> <u>다.</u></p> <p><u><신 설></u></p>	<p>제13조의2(별 칙) ① <u>다음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p>
<p><u><신 설></u></p> <p>② <u>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u></p>	<p>1. <u>제13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u> <u>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u> <u>절취한 자</u></p> <p>2. <u>제1호의 자로부터 송유관에</u> <u>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면서</u> <u>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u> <u>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u></p> <p>② <u>제1항제1호의-----</u> -----.</p>